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6,844,553,610	205,336,608
일반회계		6,124,378,606	183,731,358
특별회계		720,175,004	21,605,250
	기타특별회계	720,175,004	21,605,250
	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	4,161,703	124,851
	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	55,877,974	1,676,339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30,956,201	12,928,686
	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3,306,351	99,191
	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	143,710	4,311
	소방특별회계	225,729,065	6,771,87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,380,965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0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 47조 제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